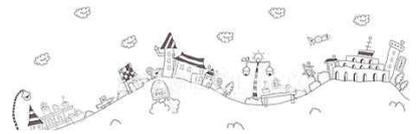


바른 인성으로 꿈을 키우는 용와교육

2024 학교 교육과정 설명회

올바른 자녀교육을 위한

학부모 교육자료



전주용와초등학교



1. 학부모 교육자료

1. 공교육 정상화법	1
2.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방안	3
3. 인권교육 및 밥상머리 교육	5
4.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	6
5. 생명존중 및 유괴 예방 교육	9
6. 사이버 도박 예방 교육	11
7. 성폭력 예방 및 양성평등 교육	13
8. 청소년 흡연 및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14
9. 감염병 예방 교육	15
10.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요령	16
11. 교육활동보호	17
12. 개인정보보호 교육	20
13. 학교발전기금 부당조성(불법찬조금) 근절 교육	23
14. 통합교육 및 장애인식개선교육	25



‘공교육 정상화 및 선행교육 규제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규제를 통한 사교육 근절-

전주용와초등학교 2024.3.28

[연수자료] 선행학습 폐해 (연수 자료)

선행학습이란 학습자가 학교교육과정에 앞서서 미리 배우는 것으로 통상적 연습의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선행학습에 대한 사회적, 교육적 폐해는 심각하다 할 수 있으며, 그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음.

○ 다른 학습자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 침해

학생이 수업 내용을 미리 알고 있을 경우 학생 자신은 학교 수업의 적극성이 결여되고 교사는 학생들이 이미 알 있다고 판단하여 기본개념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는 악순환으로 인한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이 침해를 받게 됨.

○ 사고력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의 저하

학교교육과정은 학생의 인지, 정서 및 사회발달 단계와 사고의 수준을 고려하여 구성되어 있으나 발달 단계와 사고의 수준을 넘어서는 내용의 학습으로 충분히 사고하고 이해하려는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이 떨어져 피상적이고 기계적인 문제풀이 학습에 치우치게 되어 사고력, 흥미도 및 집중력 저하 등 다양한 문제를 파생시키게 됨.

○ 남보다 앞서 나가기 위한 지나친 속도 경쟁

선행학습을 하는 내용이 곧 그 학생의 실력이라는 잘못된 편견(예: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중학교 1학년 수학을 하고 있으면 중학교 2학년 수학을 공부하는 학생이 더 잘한다는 의식)으로 인하여 선행학습은 무한 속도 경쟁에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나 사고력 저하로 대학입시에서는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하고 있음.

○ 학부모의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

통계청이 발표(2020.3.10.)한 2019년 초·중·고등학교 사교육비 총액은 약 21조원으로 이는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저출산과 노후 준비를 못하는 등 에듀푸어 양산은 중산층 붕괴를 가속화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연수 자료2]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 선행교육 관련 주요 내용

제6조(학부모의 책무) 학부모는 자녀가 학교의 교육과정에 따른 학교 수업 및 각종 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교의 정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금지 등) ① 학교는 국가교육과정 및 시·도교육과정에 따라 학교교육과정을 편성하여야 하며, 편성된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방과후학교 과정도 또한 같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방과후학교 과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편성된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9. 3. 26.>

1.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에서 「초·중등교육법」제24조제3항에 따른 학교의 휴업일 중 편성·운영되는 경우
2.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중학교 및 고등학교 중 농산어촌 지역 학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지정하는 도시 저소득층 밀집 학교 등에서 운영되는 경우

③ 학교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6. 5. 29.>

1. 지필평가, 수행평가 등 학교 시험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행위
2. 각종 교내 대회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행위
3.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④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6. 5. 29.>

[법률 제16300호(2019.3.26.)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2항은 2025년 2월 28일까지 유효함]

□ 법의 적용

규제 유형	규제 대상	규제 범위
선행교육 (교육과정 편성·운영)	앞서서 편성	총론 및 시·도 지침을 벗어난 편성
	앞서서 제공	교과별(학년별) 교과진도 운영계획을 벗어난 내용을 제공
	입학예정학생	입학예정 학생을 대상으로 사실상의 입학이후 교육과정을 운영
선행학습 유발 행위 (교육과정 평가)	지필·수행평가	배운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
	각종교내대회	배운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
	입학예정학생	입학예정 학생을 대상으로 입학이후 교육과정을 평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방안

1. 학교폭력의 개념 및 유형

학교폭력이란?	유형	
<p>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p> <p>(「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p>	신체적 폭력	때리기, 밀기, 찌르기, 차기 등
	언어적 폭력	놀리기, 비하하기, 욕하기, 모욕하기, 위협하기, 소문 퍼트리기 등
	금품갈취	돈이나 물건 요구 등
	강요	강제적 심부름, 강요등
	성폭력	언어적, 비언어적 성폭력
	따돌림	따돌림
	사이버 폭력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해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2. 가정에서 학교폭력의 징후 파악하기

피해의 징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 학생에 대한 혐담을 많이 한다. ▪ 안색이 안 좋고 평소보다 기운이 없다. ▪ 친구를 지나치게 의식하고 부탁을 거절하지 못한다. ▪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하기보다 혼자만 있으려고 한다. ▪ 성적이 갑자기 혹은 서서히 떨어진다. ▪ 청소 당번이나 다른 이유로 학교에서 늦게 올 때가 자주 있다. ▪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학교에 가기를 꺼려한다. ▪ 평소보다 어두운 표정으로 수심이 있고 공부에 열중하지 못한다. ▪ 용돈을 필요 이상으로 많이 달라고 한다. ▪ 옷이나 가방, 학용품 등을 구입하는 취향이 평소와 달라졌다. ▪ 학교에서 옷이나 신발 등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경우가 잦다. ▪ 몸에 다친 상처나 멍 자국이 발견되고 물어보면 그냥 넘어졌다거나 운동하다 다쳤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다. ▪ 교과서나 일기장, 메모지,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에 ‘죽어라’ 또는 ‘죽고 싶다’ 와 같은 폭언이나 자포자기식의 표현이 있다.

가해의 징후

- 부모님의 권위에 도전하거나 반항하는 행동을 자주 한다.
- 화를 잘 내고 이유와 핑계가 많아진다.
- 친구에게 받았다고 하면서 비싼 물건을 가지고 다닌다.
-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심이 강하다.
- 부모님이 사 주지 않은 옷이 생겼으며, 친구의 옷을 빌렸다고 한다.
- 손이나 팔 등에 종종 봉대를 감고 다니거나 문신 등이 있다.
- 친구에게 전화해서 무엇을 요구하거나 화를 내는 경우가 잦다.

3.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첫 걸음 - 부모님의 역할!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부모의 역할

- ▶ 자녀와 **정규적으로 시간을 정해 대화**하기
- ▶ 자녀와의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도록 노력하기
(감정표현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어떻게 하루를 보냈는지 이야기하기)
- ▶ **자녀가 주로 누구와 함께 어울리고, 어디에 가서 노는지 알아두기**
- ▶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기
- ▶ 전화나 메일을 통해 자녀를 수시로 격려하기
- ▶ 채팅방이나 인터넷 게시판 등의 **악의적 댓글 방지 및 바른 언어 사용** 지도하기
- ▶ 항상 자녀를 존중해 주기
- ▶ 효과적인 갈등 해결방법과 대인관계 기술을 가르쳐주기
- ▶ 상담이 필요한 학생에게는 학교 차원에서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교사(전문상담교사, 담임교사, 학교폭력 책임교사 등)과 협의하여 공동 지도하기
- ▶ **사소한 폭력이나 장난이라도 약자 입장에서는 심각한 폭력**이 될 수 있음을 교육시키기
자녀에게 **사소한 폭력이나 장난이라도 약자 입장에서는 심각한 폭력**이 될 수 있음을 교육시키기
- ▶ 누군가로부터 **원치 않은 유혹**을 받거나, **위협**을 느끼게 되면 선생님이나 부모 또는 경찰 등에게 **알리도록** 지도
- ▶ **청소년 유해업소의 출입**이나 **불필요한 시내 배회**를 하지 않도록 지도

※ 학교폭력 피해 도움 요청 기관

• 117 학교폭력신고센터

☎ 117, #117(문자), www.safe182.go.kr



인권교육 및 밥상머리 교육

1. 인권교육

○ 아동권리의 이해

우리 사회가 아동의 권리라는 개념을 고려한지는 실상 얼마 되지 않는다. 이렇게 사회적 약자로서 사회에서 돌봄을 받는 존재일 뿐 주체적인 위치로 자리 잡지 못하고 지내온 아동이 성인처럼 권리가 있는 인격체라는 것을 인정한 것은 1989년 국제연합에서 아동의 권리에 대한 협약을 만장일치로 채택하면서 인식되었다.

1. 아동은 기본적인 인권을 가진다.
2. 아동은 약자를 위한 권리를 누린다.
3. 아동은 발달 시기적 특징을 고려한 권리를 갖는다.
4. 아동은 권리를 누리기 위한 권리를 가진다.

○ 아동권리협약의 기본 원칙

- | | |
|------------------|----------------|
| 1. 아동의 최선의 이익 원칙 | 2. 생존 및 발달의 원칙 |
| 3. 비차별의 원칙 | 4. 아동 참여의 원칙 |

○ 아동 권리의 필요성

1. 아동은 그 자체로 독립된 인간 존재로 보는 인식이 미약하기에 개선해야 한다.
2. 아동은 부모의 요구 및 이익과 다른 요구 및 이익을 가질 수 있는 존재이다.
3. 아동은 필요할 때 국가의 개입으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존재이다.
4. 아동은 아동이라는 이유로 권리의 제약을 받아서는 안 되는 존재이다.
5. 아동은 세계인권선언과 아동권리협약에서 밝힌 모든 권리를 향유하는 주체적인 존재다.

2. 밥상머리교육

✓ 밥상머리교육 실천지침 10가지

1. 일주일에 두 번 이상 “가족식사의 날”을 가진다.
2.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시간에 함께 모여 식사한다.
3. 가족이 함께 식사를 준비하고 함께 먹고 함께 정리한다.
4. TV는 끄고, 전화는 나중에 한다.
5.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천천히 먹는다.
6. 하루 일과를 서로 나눈다.
7. “어떻게 하면 좋을까?”식의 열린 질문을 던진다.
8. 부정적인 말은 피하고 공감과 칭찬을 많이 한다.
9. 아이의 말을 중간에 끊지 말고 끝까지 경청한다.
10. 행복하고 즐거운 가족 식사가 되도록 노력한다.

〈학부모 교육자료 (4)〉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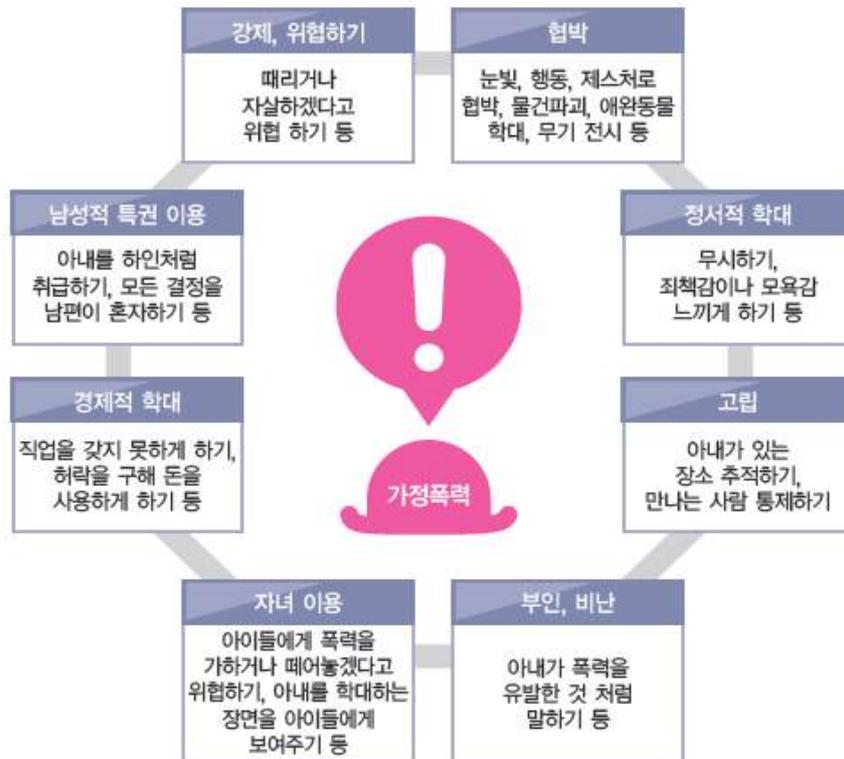
□ 가정폭력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정신적·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입니다.

□ 가정구성원의 범위

-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관계(사실상 양친자관계 포함)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동거하는 친족

□ 가정폭력의 유형



□ 가정폭력의 특징

은폐되는 폭력	가정 내 폭력/ 사회적 묵인	반복되는 폭력	지속/ 반복
중복되는 폭력	자녀폭력/ 부모 폭력	순환되는 폭력	세대 간 대물림

□ 가정폭력이 발생했다면

1.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때, 먼저 「112」에 신고하세요.
2.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면,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피해자 동의 시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에 연계하거나,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 피해자 긴급구호 : 여성긴급전화(☎ 1366), 다누리콜(☎ 1577-1366 또는 1577-5432)
- 무료 법률지원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44-7077)
- 피해치료 지원 : 지자체, 여성긴급전화1366센터, 보호시설, 상담소, 원스톱지원센터 등

□ 아동학대 정의 (※아동이란 18세미만의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 1항))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

□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지원 기관



□ 올바른 자녀 훈육법- 아이를 야단칠 때 금기사항 다섯가지

1. 감정에 휘둘리지 마세요!

야단칠 이유는 까맣게 잊고 쌓인 감정을 폭발하며 화를 내는 것은 아이를 야단칠 때 부모가 가장 많이 저지르는 잘못 중 하나입니다. 아이의 잘못을 훈육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짜증으로 풀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이런 행동은 부모와 아이 모두에게 아픈 기억으로만 남을 뿐 교육적 효과는 없다는 것을 명심합니다.

2. 다른 형제와 비교하지 마세요!

아이의 반발심을 일으키는 것 중 하나가 형제자매, 혹은 친구와 비교하는 것입니다. 비교하는 말은 아이의 심정을 참담하게 만듭니다. 경쟁 심리를 자극해 아이를 잘 되게 하려는 의도였다 하더라도 아이는 부모가 자신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3. 때리는 건 절대 금물!

아이를 때리다 보면 감정적으로 흥분할 수밖에 없다. 때리고 난 후에는 아이에게도 상처를 남기지만 엄마 또는 죄책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들쭉날쭉한 부모의 감정, 신체적 체벌에 자주 노출된 아이는 감정이 풀어지지 않고 상처로 남아 소아우울증이나 불안장애, 인격장애 등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감정이 억제되지 않을 때는 일단 자리를 피했다가 잠시 후 아이를 마주하면 극단적인 체벌을 막을 수 있습니다. 신체적 체벌의 정도가 지나치면 아동학대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4. 방에 가두지 마세요!

훈육을 목적으로 아이를 방이나 화장실에 가두는 부모가 있는데, 이런 경우 아이는 심한 불안과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부모는 아이를 혼내겠다는 의도로 무심코 한 행동이지만 이런 방법은 아동학대 중에서도 정서학대에 해당됩니다. ‘너 자꾸 말 안 들으면 집 밖으로 내쫓을 거야’식의 위협적 발언 역시 무시되고 있다고 느끼는 순간, 참을 수 없는 분노로 공격성을 보이고, 지속적으로 감정을 억압한 아이는 훗날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됩니다.

5. 과거는 묻지 마세요!

지나간 일을 상기시켜 아이를 야단쳐서 안 됩니다. 아이는 지금의 상황도 서러운데 이미 야단맞고 대가를 치른 과거의 잘못을 들춰내면 수치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지금의 잘못에 대해서도 반성하기보다 부모가 자신을 공격한다고 여겨 부모에게 적대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생명존중 및 유괴예방 교육

1.

생명존중 및 자살 예방과 대처

알아차리기 - 위험신호

1. 행동적 의사표현 - 약이나 위험한 물건 수집
- 의미 있는 소유물 정리
- 자살사이트, 엽기사이트 등에 심취
2. 언어적 의사표현 - 말, 글, 그림, 낙서 등을 통해 자살을 언급
3. 상징적 의사표현 - 성적이 떨어지거나 조퇴, 지각, 무단결석이 잦음
- 평소와 다른 기분 변화나 행동 변화, 식사·수면 상태의 변화

가정에서 대처방법



- ▶ 자녀에 대한 세심한 주의와 관찰
- ▶ 부모의 모범적인 생활을 통한 모델링 제시
- ▶ 자녀에게 충분한 정서적 지원
- ▶ 자녀와의 충분한 열린 대화 시간확보를 통한 정서의 변화 파악
- ▶ 자녀의 장점과 자존감을 높여줌
- ▶ 자녀 칭찬 10계명
 - 칭찬할 일이 생기면 즉시 칭찬하라
 - 잘한 점을 구체적으로 칭찬하라
 - 가능한 한 공개적으로 칭찬하라
 - 결과보다는 과정을 칭찬하라
 - 사랑하는 사람을 대하듯 칭찬하라
 - 거짓 없이 진실한 마음으로 칭찬하라
 - 긍정적으로 생각을 바꾸면 칭찬할 일이 보인다
 - 일의 진척사항이 여의치 않을 때 더욱 격려하라
 - 잘못된 일이 생기면 야단치기보다 관심을 다른 방향으로 유도하라
 - 가끔 스스로를 칭찬하라

2.

유괴 예방

신학기 대비 실종·유괴 예방 수칙

- ▶ 비상시를 대비하여 자녀의 새 친구, 주변 사람들의 연락처를 미리 파악한다.
- ▶ 부모의 허락 없이 낯선 사람의 차에 타지 않도록 하며, 얼굴을 아는 사람이어도 함부로 따라가지 않도록 교육한다.
- ▶ 자녀의 이름, 전화번호를 옷 안, 신발 안, 가방 안쪽 등 보이지 않는 곳에 써둔다.
- ▶ 다른 사람을 통해서든 어떠한 경우에도 아이를 데려오게 하거나 심부름 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한다.
- ▶ 도로와 떨어져서 인도 안쪽으로 걷는 습관을 기르도록 교육한다.
- ▶ 통학로의 우범지역과 사각지대를 파악하여 아이에게 위험한 곳임을 미리 알려준다.
- ▶ 모르는 사람에게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우선임을 강조한다.
- ▶ 자녀들이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실종예방수칙(안돼요! 싫어요! 도와주세요!)을 반복해서 지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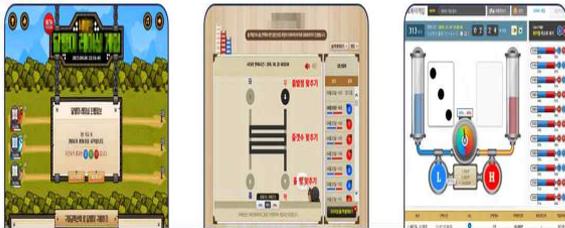
사이버 도박 예방 교육

□ 인터넷 사용량 증가에 따른 청소년 사이버 도박문제 발생 가능성 증가 우려

- 코로나19 확산 후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 속 거리두기가 시행되며 온라인상에서 다양한 상업적 이해관계에 근거한 도박 관련 마케팅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불법 사이버 도박은 부모가 모르는 사이에 정말 심각한 문제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히 어른들이 쉽게 눈치 챌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부모님과 선생님이 아이들의 심리적인 상태와 사이버 도박문제에 대해 먼저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아야 도와줄 수 있습니다.

□ 청소년 사이버 불법도박의 종류와 발견 방법

<최근 성행하는 불법 사이버 도박>



달팽이

사다리

로하이



파워볼

소셜 그래프

불법 스포츠 도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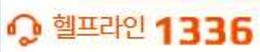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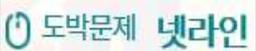
<도박에 빠졌을 때 청소년이 보이는 모습>

- 갑자기 가족에게 선물을 하거나 용돈을 준다.
 - 사주지 않은 고가의 물품들을 소지한다.
 - 집안의 물건들이 없어지거나 본인의 물건을 팔거나 잃어버렸다고 한다.
 - 스포츠 경기결과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
 - 알 수 없는 명의의 입출금이 반복된 거래 내역이 발견된다.
- ☞ 자녀의 행동에서 위의 변화들이 생겼다면 도박 문제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p>대리도박(베팅)과 관련된 청소년 도박문제</p>	<p>불법대출, 대리입금으로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리도박은 누군가가 대리로나 대신 도박을 해주는 불법 도박의 한 종류 입니다. ○ 대리 도박은 돈을 아무리 벌어도 먹튀(먹고 튀는) 당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한 큰 금액을 잃거나 도박문제로 협박을 당해도 누군가에게 하소연 할 수도 없습니다. ○ 최신 뉴스 기사 에서도 초등학교생들이 대리도박이나 베팅에 빠진 경우가 기사화되었습니다. (청소년 불법 도박 심각... 브로커 활동하고 바람잡이 역할까지. 조선일보 2019.12.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리입금이란 연24% 이상 이자를 요구하는 불법고리대금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상당수 청소년들은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대리 입금을 선호하기도 합니다. ○ 고금리 대출로 인해 피해를 당했을 경우 가까운 경찰서로 신고하고, 경찰서에 직접 신고가 어려운 경우 학교전담경찰관(SPO)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 됩니다. ○ 학교(SPO)-경찰서 신고체계 구축으로, 학교→학교전담경찰관에게 피해사실이 통보됩니다.

□ 도박문제 발견시 대처 방법

- 도박문제가 의심된다면 가정에서 자녀와 '소통'하셔야 합니다.
 - 자녀와의 소통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부모님의 '간섭'이 아니라 '지지'가 필요합니다.
 -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청소년의 도박문제에 대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 ☞ 신현준의 도박문제 예방교실 학부모편 <https://youtu.be/Xlu2M4WjNhk>
 - ☞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위드(WITH) 2020.4월호
<https://www.kcgp.or.kr/pp/prCntnts/2/insttNewsList.do>
 - '전문가 대담:코로나-19사회적 거리두기, 청소년 불법 도박으로 이어지나'
- **도박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하다면 전문기관에 도움을 청하시길 바랍니다.**
 - ☞ 청소년 도박문제 선별척도(CAGI) <https://www.kcgp.or.kr/pp/gambleIntrcn/2/selfDgnss.do>
 - ☞ 전문기관(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상담문의

<p>○ 경찰청 - 112</p> <p>○ 전북청 사이버수사대 - 280-8175</p> 	<p>○ 헬프라인(전화상담) - 국번 없이 1336 - 365일, 24시간 운영 - 상담비 무료 (*통신비 무료)</p> 	<p>○ 네티라인(온라인상담) - 모바일/PC https://netline.kcgp.or.kr - 검색창에 '네티라인' 검색 - 상담비 무료 (*통신비 발생될 수 있음)</p> 	<p>○ 문자(정보제공) - 수신자 번호에 #1336 입력 후 문의 작성 → 발송 - 정보제공 무료 (*통신비 발생될 수 있음)</p> 
---	---	--	---

<학부모 교육자료 (7)>



성폭력 예방 및 양성평등 교육

본교에서는 담임교사와 보건교사의 관련 교과시간을 활용한 연간 15차시 성교육, 관련 자료 안내 등 다양한 성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학교와 가정의 연계지도를 통해 학령기 어린이의 올바른 성 판단력을 기를 수 있도록 가정에서도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성폭력 예방을 위해 가정에서는

- 가. 성범죄자 알림e(<http://sexoffender.go.kr>) 사이트에 접속하여 수시로 집 근처에 사는 성범죄자 현황을 파악하여 어린이에게 알려줍니다.
- 나. 모르는 사람을 따라가거나, 아는 사람이라도 가족이 아닌 경우 단둘이 집에 있거나 차를 타지 않도록 자주 알려줍니다.
- 다. 평소 어린이와 충분한 대화를 하고 무슨 일이든지 가족에게 말할 수 있도록 합니다.
- 라. 어린이가 무심히 하는 행동이나 말을 잘 살펴봅니다.
- 마. 위험상황을 알고 피할 수 있도록 상황에 맞는 표현과 대처방법을 알려줍니다.

2 성폭력 발생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

- 가. 여성 긴급전화 국번 없이 ☎ 1366(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긴급 구조, 보호, 상담)
- 나. 전북 해바라기센터 ☎ 063-246-1375
- 다. ONE-STOP 지원센터 ☎ 278-0117, 0118
- 라. 우리 학교 성(性)고충상담 창구 - 보건실

3 가정 내 양성평등

혹시 어른들의 고정관념과 편견으로 어린이를 힘들게 하지는 않았나요?

일상에서 자녀에게 하는 대표적인 성차별 발언들(양성평등진흥원 제공)	
아들에게	딸에게
너는 우리 집안의 대들보야. 공부를 못하면 어떻게 처자식을 먹여 살릴래? 남자가 뭐 그런 걸 가지고 울어? 남자는 통이 커야지. 남자다워야 하는 거야.	공주같이 예쁜 딸 여자니까 옷차림이 단정해야지. 여자는 인물만 있으면 공부는 못해도 된다. 여자가 선머슴도 아닌데 왜 이렇게 설쳐? 여자애가 칠칠치 못하게...

♥ 자녀 양육과 교육에 아들, 딸을 차별하지 않고 공정하게 대합니다.

- 가. 격려, 칭찬, 꾸지람을 할 때 어린이의 성별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합니다.
- 나. 예절이나 위생은 남녀 모두가 갖추어야 할 덕목이라고 가르칩니다.
- 다.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남녀 공동의 역할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 라. 진로 선택 시 남녀 영역이 따로 있다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자녀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청소년 흡연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1 청소년 흡연의 특성

영향 요인	청소년 흡연의 특성
흡연 시작 시기	중3~고1 사이에 가장 많이 시작(최근 연령이 점점 낮아짐.)
가족흡연	흡연자가 있는 가정의 자녀들이 흡연을 많이 함.
학교생활	학교생활에 불만족할수록, 흡연하는 친구와 어울리는 시간이 길수록, 흡연하는 친구가 많을수록 흡연을 많이 함.
학생이 인지하는 부모의 반응	부모가 자신의 흡연 여부에 관심이 없거나 인정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학생일수록 흡연을 많이 함.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가 거부적, 통제적이라고 생각할수록 흡연을 많이 함.
정 서	불안감이 높고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자기 통제력이 낮을수록 흡연을 많이 함.

2 청소년 흡연 예방을 위한 가족의 역할

- 가. 부모님께서서 흡연을 하는 경우, 강한 의지로 금연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 나. 자녀에게 혹은 가족에게 담배 심부름을 시키지 않습니다.
- 다. 자녀가 함께하는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습니다.
 - 간접흡연과 3차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게 됩니다.
 - 어른이 되면 담배를 피워도 되는 것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 라. 자녀가 담배를 피우는지 잘 관찰하시고 자녀에게 관심과 사랑을 보여줍니다.

3 술이나 담배를 권하는 친구에게 'NO!'라고 말하기

- ☘ 고마워! 그러나 오늘 저녁은 마시고 싶지 않아.
- ☘ 속이 메스꺼려 술은 안 마시는 것이 좋겠어.
- ☘ 난 장염 치료중이어서 술은 마실 수 없어.
- ☘ 폐가 약해서 담배를 피우면 기침을 심하게 해.
- ☘ 난 쥬스가 좋아. 쥬스 마실래.
- ☘ (요즘 유행하는 게임, 노래 등으로 화제를 바꾼다.)
- ☘ 우리 농구하러 가지 않을래?
- ☘ 난 지금 가야해. 영화 볼 약속이 있어.



감염병 예방 교육

1 학교에서 자주 발생하는 감염병

병명	초기 증상	등교 중지 기간
홍역	귀 뒤에서부터 발진, 발열	발진 후 5일까지
수두	발열, 발진, 수포	모든 발진이 딱지가 될 때까지
유행성 이하선염 (볼거리)	발열, 귀밑이 부어오름, 식욕부진	부어오른 귀밑이 가라앉을 때까지 (약5일)
인플루엔자	38도 이상 고열, 관절통, 두통, 호흡기 증상	열이 내리고 이틀이 지날 때까지
유행성 각결막염	안구 충혈, 안구통, 눈부심, 가려움증	의사가 등교해도 된다는 진단(1~2주)

2 감염병 발생 시 등교중지 및 출석인정

- ※ 학생이 법정 감염병에 걸려 등교중지를 한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 가. 감염병이 의심되면 등교하기 전에 담임선생님께 전화 연락 후 병원에 갑니다.
 - 나. 병원 진료 후 감염병 진단을 받으면 담임선생님께 전화 후 격리 치료를 합니다.
 - 다. 완치되어 등교할 때 병원에서 의사확인서를 받아 담임선생님께 제출합니다.

3 감염병 전파 방지

- 가. 학생이 열이 나거나 기침을 많이 하는 상태로 등교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친구들에게 감염병을 전파시킬 수 있습니다.
- 나. 감염병이 발생하면 충분한 휴식을 취해서 면역력을 높여야하는데 무리하게 등교하면 치료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 다. 해마다 감염병이 유행하고 새로운 종류의 감염병이 발생하여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감염병은 누구나 걸릴 수 있으므로 단체생활에서 서로의 입장을 배려하여 감염병 발생을 조기에 차단합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요령

<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요령(7대) >

1. 외출은 가급적 자제하기

- 야외모임, 캠프, 스포츠 등 실외활동 최소화

2. 외출 시 보건용 마스크(식약처 인증) 착용하기

| 보건용 마스크(KF80, KF94, KF99)의 올바른 사용법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 어린이와 폐기능 질환자 등은 의사와 충분히 상의 후 마스크 사용

3. 외출할 때는 대기오염이 심한 곳은 피하고 활동량 줄이기

-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도로변, 공사장 등에서 지체하는 시간 줄이기
- 호흡량 증가로 미세먼지 흡입이 우려되는 격렬한 외부활동 줄이기

4. 외출 후 깨끗이 씻기

- 샤워하고, 특히 손·발·눈·코를 흐르는 물에 씻고 양치질하기

5. 물과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과 채소 섭취하기

-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 항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기

6. 환기, 물청소 등 실내 공기질 관리하기

- 실내·외 공기오염도를 고려하여 적절한 환기 실시
- 물걸레질 실시, 공기정화장치 가동(공기정화장치 필터를 주기적으로 교체)

< 환기요령 >

- 실내오염도가 높을 때는 자연환기 또는 기계환기 실시(‘나뽀’ 이상일 때 자연환기 자제)
-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 사이에 하루 3번 30분 이상 환기
- 자연환기 시에는 대기오염도가 높은 도로변 외의 다른 창문을 통한 환기 실시
- 조리 시 주방후드 가동과 자연환기를 동시에 실시하고, 조리 후에도 30분 이상 환기

7. 대기오염 유발 행위 자제하기

- 자가용 운전 대신 대중교통 이용, 폐기물 태우는 행위 등 자제하기

<학부모 교육자료 (11)>



교육활동보호

1. 교권 및 교육활동 침해의 개념

교권이란?

- ◆ 교권이란 교육활동에 관한 교육내용과 방법에 대한 선택결정권으로서 교과교육에 관한 수업내용편성권, 교재선택권, 성적평가권, 생활지도권, 징계권 등이 포함

교육활동 침해란?

- ◆ 「교원지위법」 제15조 제1항에서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라 규정

☞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교육활동 보호를 명시하고 있는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의 궁극적 목적은 교사의 교육활동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교육받을 권리)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교육부**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23.3.23.)」

학교 교육활동 활성화 및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 확대 수업 침해 행위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입니다



의도적인 수업 방해 행위 (신설)



교육활동 중인 선생님의 영상·사진을 무단 촬영



상해·폭행, 협박, 명예훼손, 스토킹



성폭력 범죄, 성희롱



불법정보 유통행위



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 부당한 간섭

※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도 교육활동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는 「교원지위법」에 따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내의 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

2. 교권침해 유형 참고 자료

의도적인 수업 방해 행위 (2023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 수업 중 교사의 지도를 무시하고 교실에서 눕는 경우 · 교실 안을 돌아다니며 다른 학생의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
상해 및 폭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신체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거나 정상적인 신체의 안전성을 해치는 행위 · 수업 중 교실 밖으로 나가는 학생을 제지하는 교원을 밀친 경우 · 교원의 신체를 향해 휴대전화기를 집어 던진 경우
협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 · 교원의 가족 등 교원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자를 해코지하겠다는 경우 · 외부의 인맥을 이용해 징계를 받게 하겠다는 경우
명예훼손 및 모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 사람의 사회적 가치를 침해하는 내용을 적시하여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 · 어떤 학생이 학생, 학부모들에게 “담임교사가 특정 학생의 몸을 만졌다.”고 허위 사실을 이야기하는 경우 · 교사에 대하여 비하 발언을 다수가 있는 장소 또는 인터넷으로 유포하는 경우 · 학생들 간 단톡방에서 특정 교사의 외모 비하 등을 하는 경우
손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치는 행위 · 학생이 지도 교사에게 불응하면서 교실 유리창을 주먹으로 쳐서 깨는 경우 · 교사의 출석부 또는 개인물품을 찢어 버리는 등의 방법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경우
성폭력 범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간, 강제추행, 공연음란, 음화제조·반포,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의 행위로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자유권을 침해하거나 성적인 접촉으로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행위 · 교사의 신체를 접촉하여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경우(강제추행) · 원격 수업을 하고 있는 교사의 얼굴을 촬영, 캡처하여 나체 사진과 합성한 경우 및 합성물을 다수 학생들에게 배포한 경우
불법정보 유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나 컴퓨터 기술을 활용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를 침해하는 행위 · 카카오톡 메시지의 단체 채팅방에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경우 · 폭행을 당하는 장면이 찍힌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CTV 화면에 나온 것처럼 게시글을 작성하여 인터넷 카페에 게시한 경우
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적으로 적법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 협박 또는 위계를 함으로써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 · 학생의 아버지가 또는 어머니가 수업 중인 자녀의 담임교사를 찾아가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소리를 지르며 위협하고 교사의 머리채를 낚아채서 넘어뜨리는 경우
교원의 영상·화상·음성 등을 촬영·녹화·녹음·합성하여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에서 자녀가 원격수업 중일 때 학부모가 교원의 수업 장면을 촬영하여 단톡방에 무단 배포한 경우 · 학생이 수업 중인 교원의 얼굴을 촬영 후 합성하여 희화화한 후 다른 학생들에게 무단 배포한 경우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부모가 수업 및 평가,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생활지도 등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앞서 설명한 교육활동 침해유형으로 규정되지 않은 유형일지라도 학교장이 교권의 존중과 교원의 신분 보장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 	

3. 교권보호를 위한 기구 및 우리의 노력

가. 단위학교 교권보호위원회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 (2024.3.28.(목) 자)

나. 교권침해 예방을 위한 우리의 노력

- 학생, 학부모, 교사(학교)가 깊이 있고 꾸준한 대화를 통하여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는 문화를 정착
- 수업 및 업무 수행을 위한 학교 방문 사전 예약 문화 정착
- 학교 전화(☎063-237-3142)



개인정보보호 바로 알고 실천해요!

개인정보 정의

개인정보란?

- ☞ 개인정보 :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일체의 정보 (성명, 주민번호, 전화번호, 영상 등)
- ☞ 개인정보보호(Privacy) : 혼자 있을 권리 (소극적) → 자기정보결정권 (적극적)



개인정보 보호법 주요내용

수집이용 및 제공 원칙

- ☞ 필요 최소성, 목적 명확성의 원칙
- ☞ 명확한 고지 (항목/방식 구체적 명시)
 - 선택정보 미동의 가능, 별도 고지
- ☞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저장 관리시 의무사항

- ☞ 관리/기술/물리적 안전성 확보조치
 - 개인정보처리방침, 책임자 지정 등
- ☞ 처리 위탁 및 양도시 제한사항
 - 별도 문서조치, 관리감독 및 공개 등
- ☞ 개인정보 파기조치

**개인정보보호
이제는 실천 !!**

- ☞ CCTV 설치목적 제한
 - 안내판 설치, 임의조작 및 녹음 금지
- ☞ 개인영상물 안전관리 및 제공 제한
 - 보호조치, 목적외 이용/제공 금지 (예외)

CCTV 설치운영

- ☞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 ☞ 유출 통지 (5일 이내) 및 신고제 (1만명 이상)
- ☞ 집단분쟁조정 및 단체소송

권리구제 및 보장



개인정보 오남용 피해방지 10계명

1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이용약관 꼼꼼히 살피기
	<p>-회원가입을 하거나 개인정보를 제공할 때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회원가입 등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자 할 경우 개인정보 처리 목적, 처리 및 보유기간,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위탁 업무의 내용 등 개인정보 취급 관련 내용을 개인정보처리방침에 포함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용자는 회원가입을 하거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경우 사업자의 개인정보 처리 목적 등을 자세히 검토한 후 가입·제공 하여야 합니다.</p>
2	비밀번호는 문자와 숫자로 8자리 이상
	<p>-회원가입 시 비밀번호를 타인이 유추하기 어렵도록 영문/숫자 등을 조합하여 8자리 이상으로 설정 안전한 패스워드란?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쉽게 추측할 수 없으며, 인터넷을 통해 전송되는 정보를 해킹하여 이용자 패스워드를 알 수 없거나 알 수 있어도, 패스워드를 알아내는데 많은 시간이 요구되는 패스워드를 말합니다.</p>
3	비밀번호는 주기적으로 변경하기
	<p>-자신이 가입한 사이트에 타인이 자신인 것처럼 로그인하기 어렵도록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 권장하는 패스워드 변경주기는 6개월이며 패스워드 변경 시 이전에 사용하지 않은 새로운 패스워드를 사용하고 변경된 패스워드는 예전의 패스워드와 연관성이 없어야 합니다.</p>
4	회원가입은 주민번호 대신 I-PIN 사용
	<p>-가급적 안전성이 높은 주민번호 대체수단(아이핀:I-PIN)으로 회원가입을 하고, 꼭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는 입력하지 않기 아이핀(I-PIN)은 인터넷상 개인식별번호(Internet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로써, 대면 확인이 어려운 온라인 에서 본인확인을 할 수 있는 수단 중의 하나입니다. 인터넷이용자가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본인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 이므로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의 오/남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I-PIN은 이용자가 인터넷 사이트 회원가입이나 성인인증 등을 위해 자신의 신원정보를 본인확인기관에 제공하고 본인확인이 필요할 때마다 식별ID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본인확인을 받는 방법으로, 다수의 본인확인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p>

5	명의도용확인 서비스 이용하여 가입정보 확인
	<p>-타인이 자신의 명의로 신규 회원가입 시 즉각 차단하고, 이를 통지받을 수 있도록 명의도용 확인서비스를 이용</p> <p>자신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타인이 자신의 명의로 자신도 모르게 회원가입이 되어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명의도용확인 서비스를 이용하여 인터넷 가입 정보 확인, 정보도용 차단, 실명인증기록 조회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p>
6	개인정보는 친구에게도 알려주지 않기
	<p>-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관리하며 친구나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지 않기</p> <p>자신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타인이 자신의 명의로 자신도 모르게 회원가입이 되어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명의도용확인 서비스를 이용하여 인터넷 가입 정보 확인, 정보도용 차단, 실명인증기록 조회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p>
7	P2P 공유폴더에 개인정보 저장하지 않기
	<p>- 인터넷에 올리는 데이터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며, P2P로 제공하는 자신의 공유폴더에 개인정보 파일이 저장되지 않도록 하기</p> <p>P2P(peer to peer)서비스는 인터넷에 연결된 모든 개인 PC로부터 직접 정보를 제공받고 검색은 물론 내려 받기까지 할 수 있는 서비스로 웹사이트에 한정되어 있던 정보추출 경로를 개인, 회사가 운영하는 DB까지 확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개인정보 또는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공유폴더에 저장하여 P2P 사이트에 올리는 것은 개인정보 노출 및 오/남용을 극대화 하는 것이라 볼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은 홈페이지나 공유폴더에 게시하지 않고 개인 메일로 전송하거나 오프라인에서 배포하여야 합니다.</p>
8	금융거래는 PC방에서 이용하지 않기
	<p>- 금융거래 시 신용카드 번호와 같은 금융 정보 등을 저장할 경우 암호화 하여 저장하고, 되도록 PC방 등 개방 환경을 이용하지 않기</p> <p>신용카드 번호와 같은 금융정보 등의 중요한 개인정보를 문서에 작성하여 저장할 경우 암호화기능을 제공하는 문서프로그램(한글,MS 오피스 등)을 사용해야 합니다.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를 프린트하여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두거나, 문서파일을 PC방 등 개방 환경에서 사용 및 복사를 자제하고, 복사 시 반드시 삭제하여야 합니다.</p>
9	출처가 불명확한 자료는 다운로드 금지
	<p>- 회원가입을 하거나 개인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약관을 꼼꼼히</p> <p>인터넷상에서 정확히 모르는 파일을 다운로드 하게 되면 그 파일이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프로그램일 경우도 있고 해킹 프로그램일수도 있어 파일을 다운로드 시행 했을 시 이용자 개인 PC에 있는 개인정보를 유/노출 시킬 수 있으므로 파일 내역을 잘 모르거나 의심이 가는 자료는 다운로드 하지 않습니다.</p>
10	개인정보 침해신고 적극 활용하기
	<p>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해당 사이트 관리자에게 삭제를 요청하고, 처리되지 않는 경우 즉시 개인정보 침해신고를 합니다.</p>



학교발전기금 부당조성(불법찬조금)근절 대책 교육

□ 불법찬조금이란?

- **불법찬조금이란** 학부모 단체(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운동부 학부모, 방과후교육활동·청소년단체 등 교육활동 후원단체)등이 학교발전기금(또는 학교회계)에 기탁·편입하지 않고, 교육활동 지원 목적으로 할당·모금을 통해 학부모 단체에서 직접 사용하는 일체의 금품.
 - 학교발전기금(또는 학교회계)으로의 기탁에 의한 학교측에서의 집행이 아닌, 학부모 개인(또는 단체)이 현금 또는 카드결제를 통해 직접 집행하는 경우
 - 불법찬조금이 금품, 향응 수수와 같은 공무원 비리와 연결되는 사례가 빈번하며, 이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교육활동 지원경비에 있어 학부모의 직접 집행이 아닌 발전기금(학교회계) 기탁을 통한 정상적인 절차를 준수함으로써 투명성을 확보해야 함 (불법찬조금에 의한 금품 수수는 개별 촌지보다 더욱 질이 나쁜 구조적 집단 촌지임)

※ 학교발전기금 조성 가능 분야 및 절차 (시행령 64조 2항)

- (분야) ①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②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③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④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
 (절차) 사전에 사용목적, 조성방법, 수입·지출계획 등이 포함된 학교발전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학교운영위원장 명의로 조성·운영

○ 불법찬조금의 유형

- **학부모회** 및 학급임원회 등 **자생단체**에서 가정통신문, 전화, 문자 등을 통해 학부모에게 **일정액을 할당**하거나 **회비 납부를 강요**하여 모금
- 집행 용도
 - 학생간식비, 학교행사 지원, 심화학습반 운영비, 교직원 회식비 등 용도
- **학교운동부 학부모회**에서 인건비 보조, 대회 출전 또는 훈련 수고비 명목으로 **정당한 회계절차 없이** 모금·집행
- ※ 단, 당초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발전기금(또는 학교회계)에 편입 사용하기로 결정한 금품을 학부모측에서 결정에 따르지 않고 임의로 모금, 사용하는 경우에는 불법 찬조금 관련 처분 기준이 아닌 회계처리 부적정을 적용함.

불법찬조금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 학교 운동부의 경우 수익자부담경비 수납 및 집행의 절차상 번거로움과 본인의 자녀에게 사용되는 직접 경비라는 이유로 학부모들간 모금행위가 위법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
 - 자생단체에서 집단적으로 모금·사용하는 것은 부패행위가 아닌 것으로 인식
- 일부 학부모 임원들의 선동에 의해 간식비, 각종행사 지원비, 선물비 등의 명목으로 일정액을 할당해 모금할 경우, 대다수 학부모가 **비협조 시 자녀의 불이익을 우려하여 동조하는 등 잘못된 인식 상존**

불법찬조금, 왜 학교를 힘들게 할까요?

- 학교발전기금 조성·운영 절차를 무시하고 학부모단체에서 임의로 불법찬조금을 조성할 경우, 학교에서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학교측에 학부모단체 관리소홀의 책임을 묻게 됨
- 학교관리자 등 관련자는 감사를 받게 되며, 감사 결과 각종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됨

불법찬조금 신고 어떻게 할까요?

[불법찬조금 신고처]

- 교육청 홈페이지, 서류, 구술, 우편 등에 의하여 도교육청과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접수
- 전북교육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https://www.jbe.go.kr>)
 - 민원참여 - 신고센터 - 일반신고센터 - 불법찬조금 신고
- 지방교육재정알리미(eduinfo.go.kr)를 통해 17개 시도 교육청 신고센터 연결
-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 민원



통합교육 및 장애인식개선 교육

I 통합교육이란?

우리 학교에는 특수학급(희망반)이 있습니다, 특수학급은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일반학교 내에 설치된 학급을 말합니다.

- 1) **특수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특성에 적합한 교육 과정 및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교육 활동을 말합니다.
- 2) **특수교육대상자란?**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선정된 사람입니다. 장애등록을 하지 않아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이 될 수 있습니다.
- 3) **통합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일반학교에서 함께 차별 받지 않으며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통합교육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한 명 한 명의 소중함을 아는 것이자, 배움의 기회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것입니다.

II 통합교육의 효과는 무엇인가요?

◦ 통합교육은 특수교육대상학생은 물론 비장애 학생에게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통합교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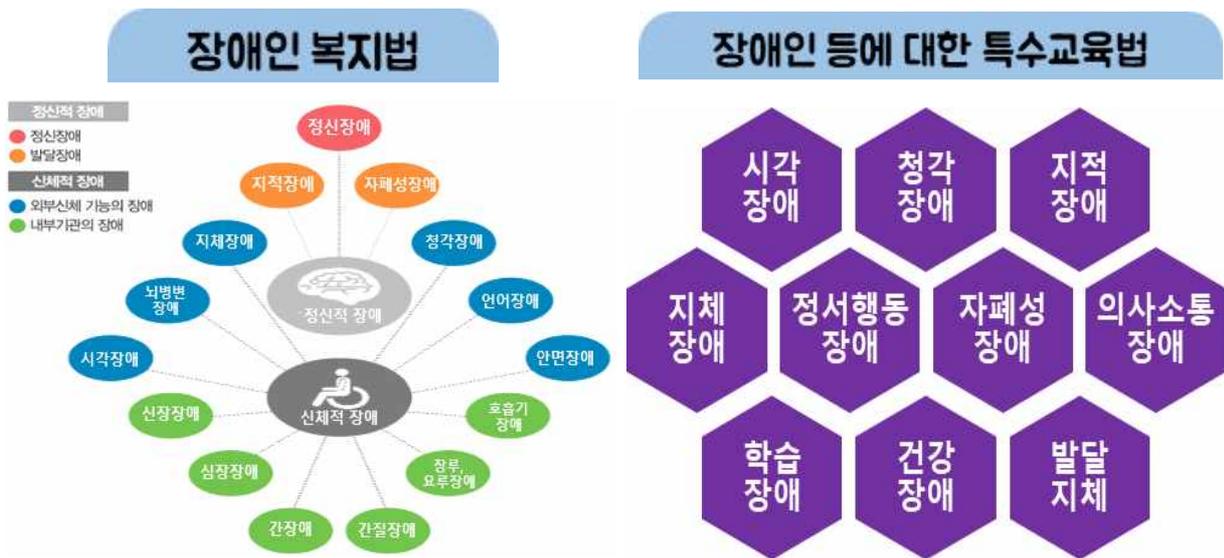
1. 특수교육대상학생

- ① 비장애 학생과의 상호작용
 - 다양한 또래와 상호작용하며 의사소통 기술과 사회적응 기술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습니다.
- ② 지역사회 참여를 위한 기반
- ③ 자존감 향상
- ④ 연령에 맞는 폭 넓은 교육
 - 또래와 상호작용하고 통합학급에서 생활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분리교육에서는 누리기 힘든 폭 넓은 교육을 통합교육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2. 비장애 학생

- ① 다양성을 수용하는 태도
 - 현대사회에서는 다양성을 수용하는 태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통합교육을 통해 인간의 다양성을 수용하고 서로 다름의 의미를 이해하는 계기가 됩니다.
- ② 타인에 대한 배려와 책임감
 - 통합교육을 통해 사회적 약자인 장애학생을 배려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책임감을 기를 수 있습니다.
- ③ 장애에 대한 편견 해소
 - 통합교육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두려움을 버리고, 장애인을 대하는 바른 태도를 배웁니다.
- ④ 인권감수성의 향상
 - 특수교육대상학생과 함께 지냄으로써 인권에 대해 몸소 체험하고 느껴 인권감수성 향상의 기회가 됩니다.

III 특수교육 관련 용어 및 장애이해



* 장애인 등록을 했다고 해도 특수교육대상자가 아닐 수 있으며, 특수교육대상자라 해서 모두 장애인은 아닙니다. 특수교육대상자는 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선정된 학생이어도 장애등록을 하지 않거나, 하지 않아도 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특수교육 대상자 ≠ 장애인

IV 장애인 학생 학교폭력 예방교육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장애인 학생 대상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는 일반학생 대상 학교 폭력 사안에 적용하는 처벌보다 한 단계 이상 높은 수위의 징계를 적용합니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장애학생의 보호)

- ① 누구든지 장애 등을 이유로 장애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장애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장애인전문 상담가의 상담 또는 장애인전문 치료기관의 요양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조제6항을 준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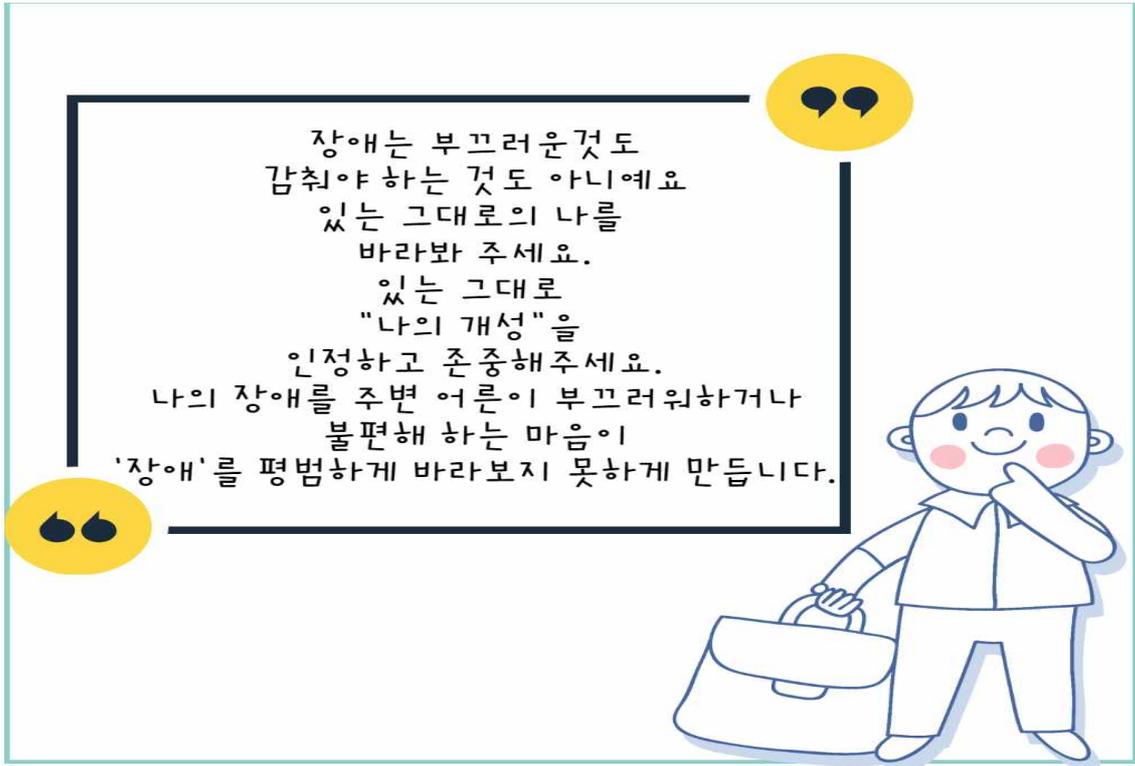
V 장애인 차별 금지법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2008.4.11.시행)

VI 장애에 대한 이해

장애인이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장애가 있다 라고 말하는 때는 우리가 그에게 어떤 지원을 해야 하는지를 생각하기 위해서입니다. 장애는 누군가를 판단하는 대표적인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장애는 그 사람의 많고 많은 특징 중에 하나일 뿐!

피부가 까만사람, 하얀사람, 머리길이가 긴 사람, 짧은 사람, 화사한 옷을 좋아하는 사람, 어두운 옷을 좋아하는 사람, 다리가 긴 사람, 짧은 사람, 안경을 쓴 사람, 안 쓴 사람 이런 특징들은 장애가 있건 없건 모두 다양합니다. 다양성에는 인종, 키, 성별, 나이, 취미, 특기, 취향 등등과 더불어 장애까지도 포함됩니다.



♡우리 자녀에게 알려주세요♡

1. 친구를 부르고, 지칭하는 말은 친구의 예쁜 이름입니다. 이름으로 친구를 불러 주고, 다른 말은 쓰지 않도록 해주세요. 친구에게 열린 마음을 가지고, 인사하고 다가가도록 해주세요. “♡♡야, 안녕?”
2. 배려의 시작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지나친 관심은 부담스러워요. 누군가 소중한 부모님의 자녀를 뚫어지게 보거나 수군댄다면 기분이 어떨지 역지사지의 마음을 이야기 나눠주세요.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속담처럼,
우리 아이만이 아닌 우리 학교 모든 학생을 위한 학부모님이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바른 인성으로 꿈을 키우는 전주용와교육

2024학년도 학교 교육과정 설명회 학부모 교육 자료

- ❖ 발행일 2024년 3월
 - ❖ 발행처 전주용와초등학교
 - ❖ 주 소 55131 전주시 완산구 장승배기로 14
 - ❖ <http://www.yongwa.es.kr>
 - ☎ 교무실 063-237-3142 FAX 237-3145
-